

#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김 유 승(You-Seung Kim)\*

###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글          | 5. 기억기관 협력의 사례        |
| 2. 선행연구 분석         | 6. 국회 기억기관의 협력을 위한 고찰 |
| 3. 기억기관 협력의 필요성    | 6.1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       |
| 4. 기억기관 협력의 절차와 조건 | 6.2 국회 기억기관 협력의 장애 요소 |
| 4.1 절차             | 7. 국회 라키비움을 위한 전망     |
| 4.2 조건             | 8. 나가는 글              |

### <초 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기억기관, 라키비움, 헌정기념관

###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Keywords: national assembly archives, national assembly library, memory institutions, larchiveum, national assembly memorial hall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 접수일: 2012년 7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2년 7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4일

##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헌법』은 제40조부터 제65조에 걸쳐 국회의 의무와 역할 그리고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고유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적 조약과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시민의 주권 의사를 통합하는 정치적 대표기능을 바탕으로,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감사권·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부여 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및 보존활동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다(김유승 2011, 96; 정태영, 김유승 2012, 142).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sup>1)</sup>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을 뿐,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은 조직적, 인적,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합당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소속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자원의 양적 증가와 형태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이들 기관들의 대응 또한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희(2010)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Larchiveum)’<sup>2)</sup>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이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를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라키비움으로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라키비움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조차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다양한 범위와 수준의 협력 사례들을 유형화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소속 기관 협력의 성공 요건을 제시하고 ‘국회 라키비움’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협력’이라는 학제적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2006년 이후 도서관과 도서관 간의 협력에 관한

1) 엄밀한 의미에서 헌정기념관은 1998년 개관된 건물의 명칭일 뿐, 직제 상의 공식명칭은 아니다. 현 직제 명칭인 ‘헌정자료담당’을 편의상 헌정기념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2) Megan Winget이 MMORPG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생산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제적 수집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합성어로 제시한 용어(Kuzzyk 2008).

학술논문이 50편 이상 발표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대표적 국내 초기 연구로는 박재용, 조윤희(2004)의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과 박물관 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기록관리학 관점에서의 국내 최초 연구 성과는 서혜란(2005)의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이다. 서혜란은 이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기록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소를 논하고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후속 연구는 2008년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조윤희(2008)는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을 통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록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책·제도, 기술, 인적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재희(2008)는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에서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의 대표적 협력기구인 영국 박물관·도서관·기록관위원회(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박성진(2008)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의 근대 공문서 소장 및 서비스 현황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본격적 학술연구 성과는 아니지만, 이승휘(2010)가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를 통해,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을 제안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김익한(2010)은 국가기록원 업무와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면 해외에서의 관련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다. 2007년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가 <21세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Archival Science*는 Paul Marty를 초빙편집자로 하여 협력과 통합에 관한 특집호를 출판한다. 이를 따라서 2009년에는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이, 2010년에는 *The Library Quarterly*가 각각 한 호씩을 할애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컨버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디지털 기억기관을 지향하는 독일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컨버전스 이슈를 다룬 Kirchhoff 외(2008)와 ‘캐나다 아카이브즈 도서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Bak and Armstrong(2008) 등 사례 중심의 연구 성과로부터, 문화유산 리포지터리로서의 기관들 사이의 역사적 컨버전스를 논한 Given and McTavish(2010)와, 이들 기관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France 외(2010) 등 이론적 측면의 연구들까지 풍부하고 폭넓은 연구 성과들이 이러한 일련의 기획을 통해 생산되었다. 이와 같은 학술적 논의와 함께, 2008년 OCLC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력의 단계를 설명하고, 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건들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같은 해 IFLA는 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전문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현장에 기반을 둔 연구들도 줄을 이었다.

### 3. 기억기관 협력의 필요성

19세기 이전 서구 사회에서 박물관 유물, 도서관 도서, 기록관의 기록물은 크게 달리 인식되지 않았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물리적 공간을 함께 하고 있었으며, 문화유산을 보존·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능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Given and McTavish 2010, 8). 이들은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기록유산기관(documentary heritage institution)', 또는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서혜란 2005, 26), 각각의 고유함과 동시에 공통적인 정보제공기관(information service institution)으로 인식되었다.<sup>3)</sup> 다시 말해, 이 기관들은 "사회적, 지적, 예술적, 정신적 성취의 증거와 유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 목표를 지니고 있다."(Dupont 2007, 13)

하지만 민주주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지식정보가 어떻게 수집, 관리,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태동하였고(Waibel and Ricky 2009, 325),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유사한 전문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각각 고유의 학문적 기반 위에, 고유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무 영역을 확보하였다. 지난 세기를 통해 각기 고유 영역 안에서 심화 발전해 왔고, 각각의 문화는 기관들의 전문용어들 만큼이나 다양해졌다(Bishoff 2004). 다시 분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 문화유산기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전통과 조직을 발전시켜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Beasley 2007,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기관들은 여전히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매개로 한 협력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기억기관들의 고민이 있다. Marty(2010)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증가로 인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사이의 전통적 구분이 퇴색"되었다고 말한다. Michalko(2007, 78)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각각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대한 대응은 특정한 기본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기억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현재 업무 관행과 비용 구조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난 세기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의 물결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해왔다(Hunter, Legg, and Oehlerts 2010, 84). 서혜란(2005, 26-27)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문화유산기관들 간 협력의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언명하며, 협력의 필요성 3가지로 '이용자 정보요구의 효율적 만족', '비용효과',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 기대'를 들었다.

박재용, 조윤희(2004)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자원 증가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개별 기관의 이용자 서비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3) 본 연구는 현용과 비현용, 전자와 비전자를 망라한 다양한 가치와 형태를 지닌 문화유산, 기록물, 박물관을 가장 폭넓게 포괄하는 용어라는 관점에서,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의 통합적 명칭으로 '기억기관'을 채택한다.

지적하며, 단일 기억기관에서 정보자원의 자아충족(self-sufficient)이 불가능해졌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써 협력을 통해 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확장된 적극적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정보자원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이용자 검색과 접근이 가능해졌고, 진일보한 효율적 검색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협력과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문화유산기관들이 관리하는 수집물들이 서로 다른 실무와 표준에 근거하여 분리되어 유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이용자들은 단일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Waibel and Ricky 2009,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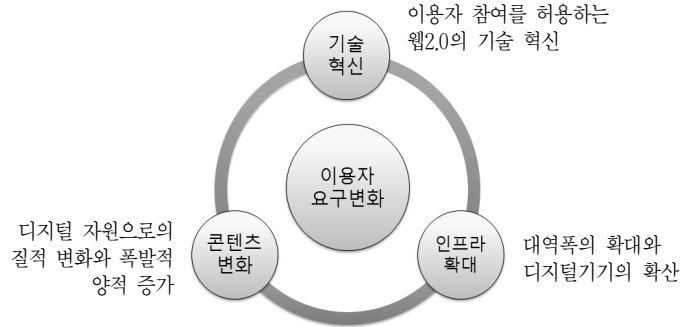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기억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정보자원을 다루고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정보자원의 차이에 방점을 두고 신경을 쓰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그렇지 않다. 전문적, 행정적 경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한다. 이러한 ‘닫힌 모델(Closed model)’보다 오늘날 세상은 ‘열린 모델(Open model)’을 요구한다(Doucet 2007, 65). 디지털 컨버전스의 최우선 지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그리고 여타 기관들 사이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그들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도서관의 책에 있던 것이든, 박물관 유물의 기술에서 온 것이든, 기록관의 기록물에서 온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디지털의 영역에서 정보자원의 기원

이 어떤 기관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Kirchhoff, Schwibenz, and Sieglerschmidt 2008, 252).

외규장각도서가 하나의 예다. 2011년 6월 우리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도서를 돌려받았다. 외규장각은 1782년 조선 정조가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립한 일종의 국가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의 하나인 ‘조선왕조의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Memory of the World)이다. 하지만 현재 외규장각 도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한다고 할 때, 이용자들에게 어떤 문화유산기관이 서비스의 주체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서, 아키비스트, 박물관 학예사들은 각자가 다루는 정보자원의 차이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자원 시대의 대부분 이용자는 그렇지 않다. 각기 기억기관의 준립 근거가 이용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기관 통합의 필요성은 이용자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 문화유산기관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이용자의 요구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의 질적·양적 변화, 웹2.0으로 대표되는 참여형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한편, 협력의 필요성은 현행 법령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7조 제2항은 도서관이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



〈그림 1〉 디지털시대 문화유산기관 협력의 동인

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는 박물관 등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법령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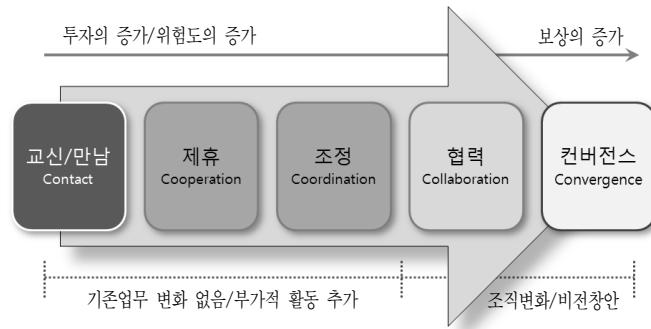
#### 4. 기억기관 협력의 절차와 조건

##### 4.1 절차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해도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기억기관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부여해왔다. Dupont(2007, 13)의 지적처럼, 도서관은 접근과 표준에 높은 가치를 두지만, 박물관 또는 기록관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서와 아키비스트들이 목록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를 중시하는 만큼 박물관 전문가들이 이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할 수 없다. 각 기억기관에 대한 이용자 또는 방문자들의 기대 역시 동일

하지 않다. 이에 Doucet(2007, 65)은 신속하고 가차 없는 변화의 진행에 동의하면서도, 선부르게 협력의 당위성만을 주장할 때 기관 구성원과 이용자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순간 여러 조직들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고 친선과 협력을 강제했을 때, 그 결과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간의 협력에 대한 OCLC의 연구보고서, “Beyond the Silos of the LAMs”에서 제시된 협력연속체 모형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교신/만남(Contact)에서부터, 제휴(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력(Collaboration)을 거쳐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즉 컨버전스(Convergence)에 이르는 과정을 연속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공적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연속 과정과 절차를 도식으로 재구성하면 〈그림 2〉와 같다(Waibel 2009, 6; Waibel and Erway 2009, 326; Zorich, Waibel, and Erway 2008, 11).

협력의 시작은 교신/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활동과 요구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 단계는 활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뿐이며, 서로를 알아가는 성격



〈그림 2〉 협력 연속체<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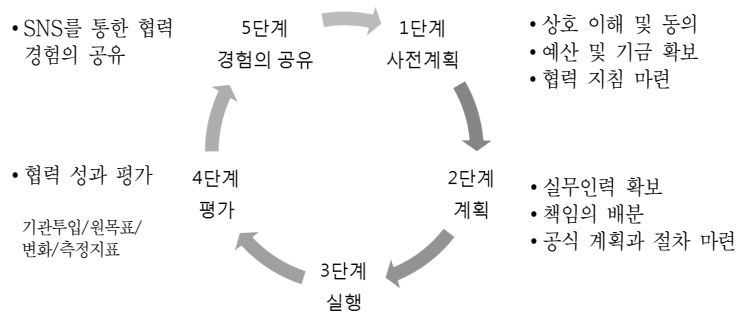
의 미팅 등을 통한 상호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제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협력을 위한 소규모의 비공식 활동이 전개된다. 세 번째는 공식적 활동이 전개되는 조정의 단계다. 협력 활동이 조직적 활동으로 진화하는 단계로서, 각 기관의 일정과 인력 활용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협력활동이 조직된다. 따라서 기관 내 인적자원의 배치현황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창조적 협력의 단계다. 단순한 교환이 아닌 창조를 위해 상호 정보와 자원이 교류되고 활용되는 단계로서, 단일 기관이 가지지 못했던 가치와 편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계로 설명된다. 단, 협력에 참여한 기관들의 물리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의 단계이다. 한 점으로의 집합, 집합점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는 컨버전스이지만 여기서는 협력이 광범위해지고 몸에 배인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협력이 수행되고 있다고 다른 이들이 인식하지 않게 되는 단계를 지칭한다. 너무나 익숙한 기간시설 또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처럼 우리가 늘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다섯 마디로 구분되는 연속적 과정은 덧셈의 공식이 적용되는 교신/만남으로부터 제휴와 조정까지의 영역과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협력과 컨버전스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각 기관 기존 업무의 변화 없이, 단지 부가적 활동들이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각기 기관의 존재 여부를 흔들 정도의 중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의 영역에서 기관은 변화의 요구를 받는다. 참여 기관들 사이의 상호적 연결성과 의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 기관의 활동, 절차, 조직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조직의 불안을 높이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협력을 위해 쏟는 시간과 자원을 증가시킨다 해서, 항상 높은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높은 투자가 낮은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보상이 있다 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아닐 수 있다(Waibel

4) Zorich, Waibel, and Erway(2008, 11)과 Waibel and Erway(2009, 326)의 협력 연속체 도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그림 3〉 협력실행의 5단계

and Erway 2009, 7).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발전 단계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Yarrow 외(2008)는 이를 사전계획, 계획, 실행, 평가, 공유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그림 3〉은 그 환류적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1단계 사전계획은 협력 주체들의 상호적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및 기금을 확보하며 협력의 수준과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준비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구현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협력의 책임을 나누는 공식 계획과 절차가 마련된다. 이러한 사전 계획 아래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3단계이며, 4단계에서는 기관투입, 원 목표, 변화, 측정 지표 등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마지막 5단계는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협력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도 참여 주체 및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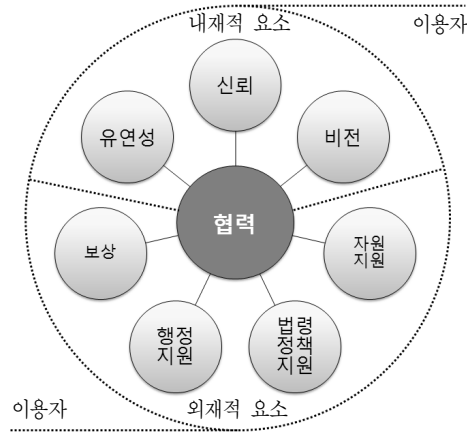
#### 4.2 조건

앞서 협력의 절차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

역기관의 협력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각 기관들이 겪고 있는 술한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협력은 그 결과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논의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본 연구는 Zorich 외(2008, 21-32)가 제안한 협력의 촉매 요소들을 협력 참여 기관과 구성원의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로 나누어 〈그림 4〉와 같은 도식으로 재구성하였다.

협력에 참여하는 기관과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내재적 요소는 신뢰, 비전, 유연성 등을 포함하며,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비정형, 비가시적 형태의 이들 요소들이야말로 성공적 협력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력 주체들이 상호 공정한 관계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협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것은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각 고유한 전문 영역의 특성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





〈그림 4〉 협력의 조건

러 문제들을 상호 이해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협력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인지하게 하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 없는 협력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소멸되는 일회성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 모두에 공유되고 내재된 비전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하지만 협력은 내재적 의지만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협력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소재와 책임 아래 수행되는 강력한 ‘행정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및 기반시설, 안정적 기금, 헌신적 직원 등 유형적 ‘자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지원과 자원지원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법령·정책 지원’이다. 낮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에서부터 법령에 의한 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협력은 참여 구성원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공정한 ‘보상’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및 구성원 평가항목에서 협력활동이 포함되어

야 하며, 금전적 보상과 승진 등으로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는 상호보완적인 필요충분조건으로 협력의 안정적,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기억기관에 기대하는 이용자 요구의 변화를 읽고 적극적으로 수용코자하는 단일한 목적을 지향하여야 한다.

## 5. 기억기관 협력의 사례

협력의 실제 사례들은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표 1>에 채택한 3단계 협력의 범주는 Dornseif (2001, 107-108)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 유형으로 제시한 ‘최소협력’, ‘선택적 협력’, ‘완전 협력’을 준용한 것이다. 하지만 Dornseif의 유형 구분이 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통합의 정도 또는 형식을 기준으로 협력의 수준을 가늠한 것인 반면, 본 연구에서의 구분은 프로그

〈표 1〉 협력의 유형

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검색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디지털도서관</li> <li>- 유럽연합 CALIMERA</li> </ul> </li> </ul>			
다국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지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li> </ul> </li> </ul>			
국가단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 유타랜드 문화역사 검색베이스</li> <li>- 독일 도서관기록관박물관포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국립도서관아카이브</li> <li>- 네덜란드국립도서관/국립아카이브즈</li> <li>- 뉴질랜드국립도서관/국립아카이브즈</li> </ul> </li> </ul>		
지역단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건물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오타와 공공도서관자료센터 /오타와시중앙 기록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퀘벡국립도서관</li> </ul> </li> </ul>		
커뮤니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전시회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온타리오 조지아나 공공도서관</li> </ul> </li> <li>• 통합입장권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시카고 공공도서관</li> </ul> </li> </ul>				
	최소 협력	선택적 협력	완전 협력		
	제휴	조정	부분 협력	전면 협력	컨버전스

램 협력, 전자자원 공유, 시설의 공동이용 및 통합 등 협력 활동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한 협력의 절차, 단계, 특성과 수준을 준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소협력’은 앞서 〈그림 2〉에서 제시한 제휴로부터 조정의 단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선택적 협력’은 부분적 협력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전면적 협력에 이르는 협력 활동을 전체를 지칭한다. 그리고 ‘완전협력’은 전면협력에서부터 컨버전스가 완성되는 단계까지의 모든 협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들은 다시 커뮤니티 단위로부터 지역 단위, 국가 수준 그리고 글로벌 단계의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 세분화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소협력은 각 기관의 기존 업무에 대한 근

본적 변화 없이 추가적 업무 성격을 지닌 낮은 수준의 부분적 협력이다. 통합 입장권 프로그램, 축제/전시회 공동운영, 공동건물이용 등 커뮤니티 또는 지역 단위의 협력이 대표적인 예다. 통합 입장권 프로그램은 한 기억기관 이용자가 이웃한 다른 기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카고 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의 ‘어린이 박물관 여권(Kids Museum Passport)’<sup>5)</sup> 프로그램을 비롯해 북미 지역 기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된 협력 사례다. 이와 함께, 최소협력에는 축제, 전시회, 전시 부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협력 사례들과 도서관과 기록관이 조직적 융합 없이 단순히 같은 건물을 나누어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지역 내 타 문화유산기관들과 공동 전시 부스를 운영한 캐나다 온타리오 조지아나 공공도서관(Georgina Public Library,

5)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시카고 소재 14개 문화유산기관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박물관 여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cited 2012.7.10].  
 〈http://www.chipublib.org/eventsprog/programs/kids/grkids\_museumpass.php〉.

Ontario) 과, 미술관·기록관 등과 협력하여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공공도서관(Denver Public Library, Colorado), 텍사스 휴스턴 공공도서관(Houston Public Library, Texas)이 있다(Yarrow, Clubb, and Draper 2008, 10-11). 단일 건물 이용 사례로는 캐나다 '오타와 공공도서관 자료센터(Ottawa Public Library Materials Centre)'와 '오타와시 중앙기록관(City of Ottawa Central Archives)'이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커뮤니티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최소 협력의 사례와 달리, 좀 더 큰 규모의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입과 조직적 변화를 동반하는 선택적 협력은 지역 단위 이상의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단위로부터 글로벌 수준에 이르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관한 다양한 협력 사례들과 협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 단위 기구들의 사례들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전자의 협력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포털(Portal zu Bibliotheken, Archiven und Museen, 이하 BAM-Portal)'은 독일 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수집물에 대한 단일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북부 유틀란트 문화 역사 검색베이스(Nordjyllands kulturhistoriske Søgebase, 이하 NOKS)'는 2001년부터 덴마크 내 기억기관들의 보유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단일 검색에 의한 정보자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문화유산자원의 다국가간 협력 사례로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42개국 51개 지역 문화유산기관들

이 참여한 유럽연합의 'CALIMERA(Cultural Applications: Local Institutions Mediating Electronic Resource Access)'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지역 문화유산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었고, 웹사이트를 통해 문화유산정보에 대한 디렉터리를 제공하고 있다(Davis 2005; Fernie 2007; IST 2007).

한편, 기억기관 협력을 지원, 관리하는 국가 단위 기구의 사례로는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이하 IMLS)'가 있다. 1996년 설립된 IMLS는 연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연구·전문도서관 등 모든 관종의 도서관과 예술, 역사, 과학, 기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박물관 그리고 기록관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 독립 연방기관이다. 지역 단위 기관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 정책개발 등을 제공하고 있다(IMLS 2012).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 '박물관·도서관·기록관 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가 있었다. MLA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의 기금을 받는 비정부 공공기관으로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영역의 발전과 혁신을 증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기억기관들을 위한 정책과 선결과제들에 대해 정부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MLA 2011).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새로운 정책에 의해 2010년 7월 MLA의 폐지가 예고되었다. 2011년 10월에 각 기능들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6) 도서관과 기록관 전용으로 신축 설계된 이 건물은 28,000㎡ 규모로 2011년 3월 완공되었다.

England)'와 '영국 국립아카이브즈(The National Archives)'로 이관되는 등 순차적인 해산절차가 진행되었고, 2012년 5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DCMS 2010/2011; Flood 2010).

글로벌 단위의 선택적 협력으로는 세계디지털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 이하 WDL)을 들 수 있다. 2009년 4월 출범한 WDL은 유네스코와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적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매뉴스크립트, 지도, 희귀 도서, 악보, 음반, 필름, 인쇄물, 사진, 건축도면 등 전세계 문화권으로부터의 주요 정보자원을 다국적 언어로 인터넷 상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협력의 사례이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기억기관의 전면적인 조직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협력은 캐나다로부터 시작한다. 2004년 '캐나다 도서관·아카이브즈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에 의해 국립기록관과 국립도서관이 통합되어 '캐나다 도서관·아카이브즈(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가 설립되었다. LAC는 도서관과 기록관 수집물 및 서비스 간의 새로운 시너지 생산을 목표로, 모든 보유 자원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였다(Bak and Armstrong 2009, 291). 완전협력의 사례는 국가단위 조직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국립도서관·아카이브즈(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가 그 예다. 이후, 뉴질랜드 정부가 2011년 2월 국립도서관법과 공공기록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아카이브즈와 국립도서관을 내부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로 통합하였으며(Guy 2010), 네덜란드 정부가 2013년을 목표로 국립도서관과 국립아카이브즈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National Archives of the Netherlands 2012) 등 유사한 완전협력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다.

## 6. 국회 기억기관의 협력을 위한 고찰

이상에서 디지털 시대의 환경변화에 직면한 기억기관 협력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한 절차와 조건을 논의하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일회성 행사 차원이 아닌, 부분 협력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속적 협력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협력의 불필요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할 뿐 아니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회 기억기관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지식정보와 문화유산들은 국회가 생산, 활용, 관리하는 방대한 자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의정활동에서 대한 구술기록에서부터, 사진, 동영상, 기타 박물관 자료와 국회방송국의 방송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종이기록물에서부터 웹 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기억기관이 손쓸 수 있는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관리와 장기적 보존 그리고 효율적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다음에서는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 요인을 논하고자 한다.

### 6.1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

국회도서관의 연혁은 1952년 국회도서관실의 개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갖춘 것은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법률 제1454호로 「국회도서관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국회 내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납본제를 시행한 것이 이때부터이기 때문이다. 1980년 국회도서관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1981년에는 「국회도서관법」의 폐지와 「국회사무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사무처 소속 기관으로 위상이 격하되기에 이른다. 이후 사무처의 보조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8년에서야 다시금 국회 내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한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의거,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헌정자료 관리 업무는 1978년 국회도서관 총무과 소속의 홍보자료관실 신설과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직제 상 헌정자료 관리에 대한 명

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것은 1981년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 헌정자료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부터다. 그러나 불과 4년 후인 1985년 국회사무처 의사국 헌정자료관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1989년 국회도서관으로, 1994년 국회사무처 공보국으로 거듭 소속이 변경되었다. 2000년부터는 전부개정된 「국회사무처직제」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헌정기념관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소속을 다시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옮겨 2012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회방문자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내 기억기관 중 가장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회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으로 2000년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설립된 것이 국회기록보존소다. 2009년 「국회도서관직제」와 「국회사무처직제」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회도서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표 2> 참조).

<표 2>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

연도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소
1952	국회도서관실 개설		
1963	국회도서관법 제정. 입법부 내 독립기관 됨		
1978		국회도서관 총무과 홍보자료관실 신설	
1981	국회사무처법 전부개정. 사무처 기관 됨(1.30.)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 헌정자료관 신설(2.4.)	
1985		국회사무처 의사국 헌정자료관으로 소속 변경	
1988	국회도서관법 제정. 독립기구로 환원		
1989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으로 소속 변경	
1994		국회사무처 공보국 헌정자료담당관으로 소속 변경	
2000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신설
2009-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소속 변경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변경
2011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		

출처: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 60년사」

이상에서 각 기관의 연혁은 공통적인 2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가 지속적인 조직 위상의 변동이고, 둘째가 조직적 변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기관 간 상호 연계다. 국회도서관이 1988년 독립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회복한 후 그 입지를 다져온 반면,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그 위상이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기념관은 가장 복잡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헌정자료 관리 업무는 국회도서관 총무과,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회도서관, 다시 국회사무처 공보국으로 이전되었다가 국회기록보존소 산하로, 그리고 또 다시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담당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을 겪었다. 국회기록보존소 역시 상급 조직이 변경되는 경험을 겪었고,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법적 지위를 국회도서관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위상의 변화 속에서도 세 기관들은 눈에 띄이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헌정기념관은 국회도서관 산하 기구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1985년 국회사무처로 이관되었을 당시, 국회도서관도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1988년 국회도서관의 독립기구화 이후 헌정기념관이 국회도서관으로 소속을 옮긴 것은 이러한 관계성을 반증한다. 헌정기념관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회기록보존소에 의해 운영된 바 있는데, 2012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과 한 몸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세 기관들이 조직적 통합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된 경험이 앞으로의 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시기 통합과 이관 그리고

재통합의 과정들은 협력에 대한 비전의 공유와 상호 신뢰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조직적 논리에 의해 강제된 변화였기 때문이다.

## 6.2 국회 기억기관 협력의 장애 요소

앞서 협력의 촉매 요소들을 논의하였듯이 (<그림 4> 참조), 국회 기억기관 협력의 장애 요소 역시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의 구분은 실제 구현됨에 있어 강한 상호연관성을 전제로 하기에, 요소들 간의 경중을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협력의 경험이 부재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예측되는 내재적 요인보다는 현실의 외재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재적 장애 요인의 첫째는 각 기관이 근거하는 법률과 존립 목적의 상이함이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고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제공과 참고회답 등의 도서관 봉사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국회사무처 직제」와 「헌정기념관 운영내규」를 근거로 하고 있는 헌정기념관은 “임시의정원 및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의 기능과 권한 등 활동상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 전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직제」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규

정 아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임무로 삼고 있다(〈표 3〉 참조).

둘째는 각 기관장의 직급 차이이다. 국회도서관장은 차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이는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라는 명시한 『국회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헌정기념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이 맡는다. 『국회사무처 직제』 제3조 제1항은 홍보기획관을 “이사관, 부이사관,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책임지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은 『국회도서관직제』 제10조 제1항에 의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는 국회 기억기관 중 가장 낮은 직급이며, 국회도서관 내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관리국, 정보봉사국 등 다른 실, 국보다도 낮은 직급이다.

셋째는 기관 규모의 차이이다. 기관장의 직급은 기관의 규모 및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국회기록보존소를 제외한 국회도서관 전체 직원 수가 404명인 것에 비해 타

〈표 3〉 국회 기억기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직무 및 기관장 직급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법령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사무처 직제』 『헌정기념관 운영내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직무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제공과 참고회답 등 도서관 봉사를 행함으로써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	임시의정원 및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의 기능과 권한 등 활동상에 관한 기록물 보관, 전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회도서관법』 제2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조
기관장 직급	정무직 차관급 『국회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이사관, 부이사관, 2급/3급 상당 별정직 『국회사무처 직제』 제3조 제1항	부이사관, 서기관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 제1항

〈표 4〉 국회 기억기관 조직 구성\*

기관명	부서명	직원 수(명)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과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404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심의관** 정치행정자료과/ 경제사회자료과/ 국외자료과/ 인터넷자료과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률자료과/ 외국법률자료과/ 법률정보개발과	
	정보관리국 전자정보개발과/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지원과	
	정보봉사국 자료수입과/ 자료조직과/ 열람봉사과	
	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계/ 기록관리계/ 기록정보서비스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실	17(2)***
		16

\* 출처: 국회기록보존소 2011; 김유승 2011 재인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국회사무처 웹사이트 <<http://nas.na.go.kr/>> [검색일 2012.7.12].

\*\* 의회정보실 직속 기구

\*\*\* ( ) 별정직 자료조사요원

기관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규모다.<sup>7)</sup>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내 국 단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상인데다, 17명 중 직급 상 기록연구사와 기록연구관은 각 한 명뿐이다. 그나마 17명 정원 중 기록관리와 관계없는 직무를 맡고 있는 7명을 제외하면, 업무분장 상 기록관리 업무 종사자는 10명에 불과하다. 단, 2명의 별정직 자료조사요원이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헌정기념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홍보담당관실 소속 16명 중 4명만이 업무분장 상 헌정자료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헌정자료업무 총괄, 헌정자료 수집·촬영 및 이미지 등록,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헌정자료 수집전시지원에 각 1명씩이 배정되어 있을 뿐, 박물관 또는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예연구사나 기록연구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협력의 성공에 있어 협력 주체들의 동등한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서혜란 2005, 38). 반대로, 기관 간 법령, 위상, 규모의 불일치와 불균형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조직과 규모의 논리에 의해 강제된 협력과 통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협력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의 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비전의 공유라는 내재적 요소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그 올바른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현단계 국회 기억기관 협력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외재적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 7. 국회 라키비움을 위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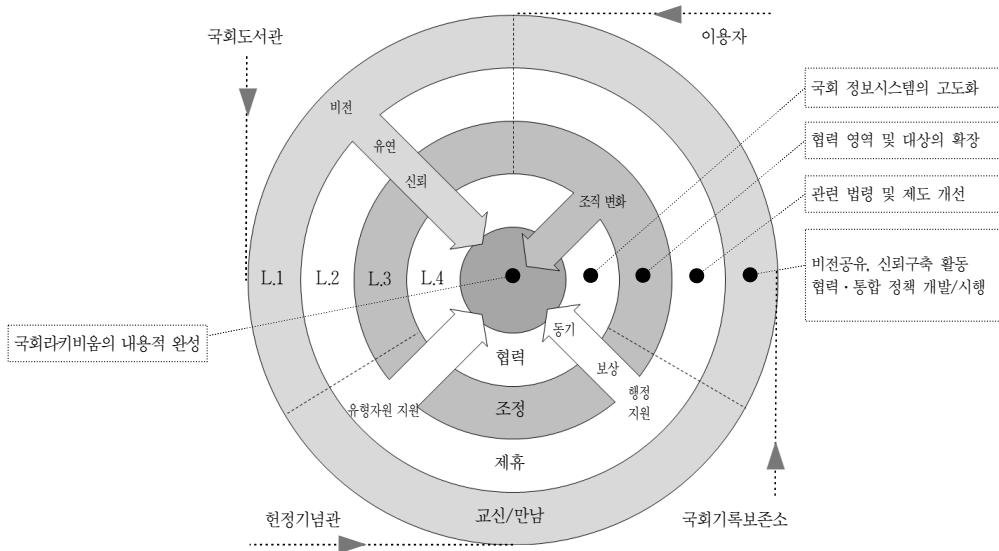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국회 기억기관들은 나름의 당면 과제들을 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국회 기억기관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과 대안을 모색하며,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 및 신뢰구축 활동에서부터 '국회 라키비움'으로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5> 참조).

조직표 위에 그려지는 형식적 통합이라면 직제 개편 등을 통해 일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과 통합의 내용적 완성이 가는 길이 그러한 일방적 방법으로 달성되지 않음을 앞선 이론 논의와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는 말단 직원에서부터 기관장에 이르는 전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부터 내용적 통합에 이르는 단계별 요소와 과제의 성취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협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다(L1). 상호 전문영역에 대한 유연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과 비전을 공유하는 활동은 협력의 시작에서부터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 이는 협력 주체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없는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식 전환을 제도로 강제하고, 전환된 인식이 다시금 제도를

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회도서관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101명, 지원인력(공익근무요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국회 라키비움을 위한 단계적 전략

고도화시키는 선순환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기억기관 전 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성을 끌어내어야 한다.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들은 이러한 집단적 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다음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단계다(L2). 국회 기억기관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하여, 나아가 국회라키비움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제도의 개선이다. 법적 강제력이야말로 일회적 협력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LAC의 탄생이 국립 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을 위한 특수 목적의 법제정을 기반으로 했듯이, 각각의 국회 기억기관들이 설립의 근거로 두고 있던 법령들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다. 기관의 통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법」, 「국회

도서관직제」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 내 소속기관의 위상과 업무를 규정하는 법령의 개선은 통합 체제의 제도화라는 장기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당면 과제인 국회 기억기관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의 실질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격에 맞는 규모와 권한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부터 헌정기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법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앞서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논의한 기관 간 불균형 역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이 본격화되는 이 단계에서부터는 원활한 협력 활동을 가능케 할 인적 자원과 예산 등을 망라한 유형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 예산, 공간,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법령의 개선은 공허한 레토릭이

되고 만다. 또한, 협력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여 주체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고, 협력의 동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세 번째 단계의 주된 과제는 협력 영역 및 대상의 확장이다(L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회 기억기관들은 국회와 소속기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들이 생산하고 활용하는 정보자원의 일부분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자원에서부터 웹 정보자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자산이자 역사의 일부분인 주요 자원들이 통합적 관리체계도, 지적 질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멸실, 훼손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정보자원의 대상과 범주, 그리고 책임소재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는 관리대상 기록물을 국회공식 기록물과 함께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대상이 국회 공식물 기록물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에 대한 범주를 특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회 관련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협력 활동이 심화되는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 조직 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 불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번째 단계는 국회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기억기관의 협력과 통합의 목적이 오늘과 미래를 위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있다는 점에서, 국회 정보시스템

의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서비스의 개선은 필수적 과업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방대한 정보자원의 체계적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헌정기념관 홈페이지는 기관에 대한 단순 안내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기록보존소는 그나마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보존,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본 통로인 홈페이지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 규모와 위상으로 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2012년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삭감 등의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산된 국회 기억기관의 정보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 정보서비스를 대안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각 기억기관이 다루고 있는 정보자원들의 특성으로 인해 통합적 검색서비스 구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정보자원의 목록과 기술을 위한 표준 개발은 난제 중의 난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검색시스템의 구현을 장기적 과제로 상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각 기관 복수의 검색시스템을 함께 담아내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단계별 과업의 성과를 통해 다다르다 하는 마지막 단계는 국회라키비움으로의 내용적 완성이다. 하지만 제시된 단계는 각 과업의 이상적 실행 순위일뿐, 실제 협력 과정에서 반드시 제시된 단계 순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단계의 과업은 계획·실행·평가·공유가 반복되는 환류 과정을 거치며, 밀

접한 상호관계 속에 연쇄반응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정비를 제1의 과제로 놓고, 이를 통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의 가장 합당한 방식이겠지만, 통합의 형식적 프레임을 먼저 구축한 후,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채택된다 해도 오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된 어느 한 단계, 어느 한 요소라도 부재할 경우, 라키비움으로의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국회라키비움 구축에 있어서 절차적 선후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 내용적 요소들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 8. 나가는 글

디지털 시대 기억기관 간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그 과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기관 간 통합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협력과 통합이 제기되는 근본적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

다. 기관을 위한 기관의 논리로써 협력과 통합이 오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협력과 통합의 중심에는 기관이 아닌 지식정보와 문화유산 그리고 이를 활용하게 될 오늘과 미래의 이용자가 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국회 지식정보와 문화유산의 올바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장기적 접근과 활용을 위하여 협력과 통합이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 라키비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임무를 성취하기 위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어떻게 국회가 생산하고 활용하는 방대한 정보자원을 어느 하나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자원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이야말로 국회 기억기관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기억기관의 협력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국회기록보존소. 201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 부개정규칙안』, 재수정안에 대한 국회도서관 의견. [2011/2/17].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김익한. 2010. 의정활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

본계획 수립.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 연구소.  
 박성진. 2008.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75-88.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 16(2): 25-41.
- 이승희. 2010.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 확립.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15-23.
- 정태영, 김유승. 2012.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41-165.
- 조윤희. 2008.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 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5-21.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Bak, Greg and Armstrong, Pam. 2008. Points of convergence: seamless long-term access to digital publications and archival records at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rchival Science*, 8: 279-293.
- Beasley, Gerald. 2007. Curatorial Crossover: Building Library, Archives, and Museum Collections.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20-28.
- Bishoff, Liz. 2004. The Collaboration Imperative. *Library Journal*, 129(1): 34-35. [cited 2012.2.6].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371048.html>>.
- Davis, Rob. 2005. CALIMERA Co-ordinating IST for Europe's Local Cultural Institu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IST Programme. [cited 2012.7.10]. <<http://naple.mcu.es/sites/naple.mcu.es/files/runkel.pdf>>.
- DCMS. 2010. Future of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2010. 11.23. [cited 2012.7.10].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7581.aspx](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7581.aspx)>.
- \_\_\_\_\_. 2011. The National Archives will take on the leadership role for the archives sector. 2011.4.20. [cited 2012.7.10].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8063.aspx](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8063.aspx)>.
- Dornseif, Karen. 2001. Joint Use Libraries: Balancing Automoy and Cooperation.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s*, 15(1-2): 103-115.
- Doucet, Michelle.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 Case Study of a National Library, Archives, and Museum Merger.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61-66.
- Dupont, Christian. 2007.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esting Mission, Converging Futures?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13-19.
- Fernie, Kate. 2007. The local dimension in the European Digital Library: from MINERVA and CALIMERA to MICHAEL. MLA Council.

- Flood, Alison. 2010. Hunt proposes closure of the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The Guardian*. 2010.7.26. [cited 2012.7.10].  
 <<http://www.guardian.co.uk/books/2010/jul/26/jeremy-hunt-to-close-m-la>>.
- France, Fenella, Emery, Doug, and Toth, Michael. 2010.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data, and management in a library imaging program. *Library Quarterly*, 80(1): 33-59.
- Given, Lisa and McTavish, Lianne. 2010. What's old is new again: The reconvergence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digital age. *The Library Quarterly*, 80(1): 7-32.
- Guy, Nathan. 2010. Minister welcomes State Sector legislation. *beehive.govt.nz*. 2010. 12.11. [cited 2012.7.11].  
 <<http://www.beehive.govt.nz/release/minister-welcomes-state-sector-legislation>>.
- Hunter, Nancy, Legg Kathleen, and Oehlerts, Beth. 2010. Two librarians, and archivist, and 13,000 images: Collaborating to build a digital collection. *The Library Quarterly*, 80(1): 81-103.
- IMLS. 2012. Libraries and Museums in an era of participatory culture. [cited 2012. 7.10].  
 <[http://www.imls.gov/assets/1/AssetManager/SGS\\_Report\\_2012.pdf](http://www.imls.gov/assets/1/AssetManager/SGS_Report_2012.pdf)>.
- IST. 2007. CALIMERA: Cultural Applications: Local Institutions Mediating Electronic Resource Access. European Commission. [cited 2012.7.10].  
 <<http://cordis.europa.eu/ist/digicult/calimera.htm>>.
- Kirchhoff, Thomas, Schwibenz, Werner, and Sieglerschmidt, Jörn. 2008. Archives, libraries, museums and the spell of ubiquitous knowledge. *Archival Science*, 8: 251-266.
- Kuzyk, Raya. 2008. Library Journal,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07/30/2008. [cited 2012.4.9].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582968.html>>.
- Marty, Paul. 2009. An 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information age. *Archival Science*, 8(4): 247-250.
- Michalko, James. 2007.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chiving Scale and Relevance in the Digital Age.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75-79.
- MLA Council. 2011.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1. [cited 2012.7.10].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1012/hc14/1401/1401.pdf>>.
- National Archives of the Netherlands. 2012.

Koninklijke Bibliotheek and Nationaal Archief to move forward together. 2012.1.10. [cited 2012.7.10].

<<http://en.nationaalarchief.nl/newsroom/press/koninklijke-bibliotheek-and-nationaal-archief-to-move-forward-together>>.

Waibel, Günter and Ricky Erway. 2009. Think global, act locally: library, archive and museum collaboratio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323-335.

Waibel, Günter. 2009.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From cooperation to Collaborative transformation. LMLAG-Not Museum Pieces? The Developing Role of Archivists and Libraries in Museum.

Yarrow, Alexandra, Clubb, Barbara, and Draper, Jennifer-Lynn.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The Hague: IFLA Headquarters.

Zorich, Diane, Waibel, Günter, and Erway, Ricky. 2008.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Report produced by OCLC Research. [cited 2012.4.7].

<<http://www.oclc.org/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8/2008-05.pdf>>.

[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규칙 제164호, 2011.4.20, 전부개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53호, 2010.2.24, 전부개정.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9704호, 2009.5.21, 일부개정.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172호, 2011.12.27,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규칙 제166호, 2011.8.26, 일부개정.

『국회사무처법』 법률 제9403호, 2009.2.3, 일부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2011.4.5,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0367호, 2010.6.10, 일부개정.

『헌정기념관 운영내규』. 국회사무처 내규 제447호.

[ 관련 사이트 ]

덴마크 ‘북부 유틀란트 문화 역사 검색베이스 (Nordjyllands kulturhistoriske Søgbase)’. [cited 2012.7.10].

<<http://www.historie-online.dk>>.

독일 ‘도서관·박물관·기록관 포털(Portal zu Bibliotheken, Archiven und Museen)’. [cited 2012.7.10].

<<http://www.bam-portal.de/>>.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 Museum and Library Service)' [cited 2012.7.10].  
<<http://www.ims.gov/>>.
- 미국 '시카고 공공도서관'. [cited 2012.7.10].  
<<http://www.chipublib.org/>>.
- 유네스코 '세계디지털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 [cited 2012.6.30].  
<<http://www.wdl.org/en/>>.
- 유럽연합 'CALIMERA(Cultural Applications: Local Institutions Mediating Electronic Resource Access)'. [cited 2012.7.10].  
<<http://www.calimera.org/>>.
-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국립도서관·아카이브즈(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 [cited 2012.7.11].  
<<http://www.banq.qc.ca/>>.